

정 관

| | |
|-----------------|-----------------|
| 제정 1965. 12. 3 | 개정 1985. 4. 19 |
| 개정 1966. 11. 8 | 개정 1985. 11. 9 |
| 개정 1967. 3. 24 | 개정 1987. 4. 29 |
| 개정 1968. 7. 15 | 개정 1989. 4. 29 |
| 개정 1970. 3. 6 | 개정 1991. 7. 11 |
| 개정 1971. 11. 26 | 개정 1993. 4. 27 |
| 개정 1973. 10. 27 | 개정 1994. 1. 24 |
| 개정 1974. 7. 9 | 개정 1995. 9. 19 |
| 개정 1974. 12. 30 | 개정 1998. 11. 4 |
| 개정 1976. 4. 14 | 개정 1999. 4. 16 |
| 개정 1977. 3. 9 | 개정 1999. 10. 20 |
| 개정 1977. 10. 29 | 개정 2001. 3. 29 |
| 개정 1978. 12. 21 | 개정 2007. 3. 6 |
| 개정 1979. 5. 2 | 개정 2008. 3. 24 |
| 개정 1980. 11. 21 | 개정 2011. 1. 21 |
| 개정 1981. 11. 14 | 개정 2012. 3. 26 |
| 개정 1982. 11. 23 | 개정 2013. 4. 10 |
| 개정 1983. 11. 28 | 개정 2014. 6. 11 |
| 개정 1984. 11. 15 | 개정 2016. 3. 2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약칭 KIRA라 한다. <개정 2007. 3.6, 2012. 3.26>

제2조(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6>

제3조(조직) ① 협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 도 및 시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건축사회라 한다. <개정 2007. 3.6, 2012. 3.26>

② 건축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지역건축사회라 한다.

제4조(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07. 3.6>

제5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2012. 3.26>

1. 건축사 업무의 개선 발전
 2.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
 3. 건축 저작권 보호 및 지원 육성
 4. 건축 및 건축사업에 관한 자문 및 대정부 건의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
 7.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8. 건축 및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9. 국토이용계획 및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10.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감정
 11.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 개선
 12. 국제기구와 국가간 건축교류 및 정보교환
 13. 건축연구소 및 건축정보센터 설치 운영
 14.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15.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위탁된 업무
 16.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7. 건축 관련 신문·방송통신 및 정보 관련 사업
 18. 회원 업무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9. 건축문화 진흥사업
 20.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1. 건축설계경기 활성화사업
 22.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사업
 23. 한옥마을 조성사업
 24.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협회는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을 설치·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1>
- ③ 협회는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협회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24, 개정 2012. 3.26>
1. 건축시장 동향과 전망

2. 건축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3. 건축사 업무 지원 및 개선 대책
4. 협회운영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5. 협회의 운영 개선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24, 개정 2012. 3.26>

[전문개정 2007. 3.6]

제6조(제규정)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3.6>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 협회의 정회원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2. 전문회원 : 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건축관련 전문가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3. 예비회원 : 건축사법에 따른 실무수련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4. 학생회원 : 대학에서 건축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③ 협회는 국내외 건축문화 창달 및 협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 또는 법인에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 3.26>

[전문개정 2007. 3.6, 2012. 3.26]

제8조(입회) 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 <개정 2012. 3.26>

② 삭제 <2014. 6.11>

③ 제7조 제2항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6.11>

④ 회원의 입회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신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 3.6>

[전문개정 2007. 3.6]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제4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협회의 임원, 건축사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저작권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4.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5.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제4호의 경우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와 제32조 제5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3.6>

③ 제1항 제2호의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 중 협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당시 15년 이상의 협회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으로 한다. <신설 2012. 3.26, 개정 2014. 6.11>

1. 협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2. 건축사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3. 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사람

④ 제1항 제2호의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 중 건축사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당시 5년 이상의 협회 정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신설 2014. 6.11>

[전문개정 2007. 3.6]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개정 2008. 3.24, 2012. 3.26>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6. 회원 인증 절차를 이행할 의무
 7.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 ② 회원은 제1항의 의무사항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26>
1. 협회의 직위 또는 협회가 부여한 명칭 사용
 2. 협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
 3. 활동사항 결과보고

제10조의2 삭제 <2012. 3.26>

제11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삭제 <2014. 6.11>
3. 제명
4. 퇴회
5.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른 자격취소
6. 기타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의 취소

② 제1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취소 확정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 3.6>

[전문개정 2012. 3.26]

제11조의2(권리의 정지) ① 정회원이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등록을 하기 이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6.11>

② 제1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회 및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26>

제12조(퇴회) 협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

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6>

제 3 장 총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개정 2007. 3.6>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7. 3.6, 2014. 6.11>

제14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해당 건축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되 협회 직전임원 및 건축사회 직전회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역대회장 및 현직임원, 각 건축사회회장은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4.10, 개정 2014. 6.11>

⑤ 건축사회는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회에서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1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7. 3.6>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7. 3.6>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회원 총수의 10분의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다만, 감사 1인 유고시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

차를 이행하고, 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개정 2007. 3.6>

⑤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3.6, 2008. 3.24, 2011. 1.21, 2014. 6.11>

1. 정관의 개정
 2. 협회발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천계획의 승인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또는 불신임(회장의 선출 또는 소환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6.11>
 5.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6.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 이사회규정, 감사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정회원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8.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대의원 3분의1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7. 3.6>

[전문개정 2012. 3.26]

제17조(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11>

② 정관개정의 건은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6. 11>

[전문개정 2012. 3.26]

제18조(회의록) ① 의장은 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공지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 3.6>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상근 1인, 비상근 4인)
3. 이사 : 21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근이사, 당연직이사 포함)
4. 감사 : 2인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3.6, 2012. 3.26>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비상근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제27조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7. 3.6>
- ⑤ 회장은 임원(감사 제외)의 활동사항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26>

제20조의2 삭제 <2012. 3.26>

제2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4.10, 2014. 6.11>

- ② 비상근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7. 3.6, 2008. 3.24>
- ④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정관이 정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적용은 선출기한에 한 한다. <신설 2014. 6.11>
-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 남은 회장 보궐선거는 비상근부회장을 후보자로 하여 이사와 시도건축사회장의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4. 6.11>
- ⑦ 이사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개정, 2014. 6.11>
- ⑧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6.11>

제21조의2(선거관리 및 운동 등) ① 협회는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 및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등은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선거관리규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후보자등’이라 함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 ⑥ 회장 또는 감사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으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6.11]

제21조의3(회장의 소환 등) ①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환 할 수 없으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 한하여 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1.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명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소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6. 3.22. 단서규정 삭제>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명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소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6. 3.22. 단서규정 삭제>
- ② 회장의 소환은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투표 방법 및 절차는 회장선출과 같다.
-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은 총회에서 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 중 선임감사 순으로 대표가 되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한다. 이 경우 감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대표가 되어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
- ⑤ 회장의 소환 및 임원의 불신임과 관련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공보물의 배포 등 소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6.11]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회장외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10, 2014. 6.11>

-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정기총회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다만,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은 선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07. 3.6, 2013. 4.10, 2014. 6.11>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소환결정이, 그 밖의 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개정 2014. 6.11>

제23조(임원의 선출보고 및 회장당선인) ①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3.24, 2013. 4.10, 2014. 6.11>

- ② 제21조제1항에 의한 회장당선인은 각 호가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6.11>

1. 협회의 자료 확인
2. 회장과 업무협조 및 공조
3.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참석
4. 예산수립에 대한 의견 제출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

제24조(고문 등) ① 회장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회장은 협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직 인사 약간 인을 명예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 [전문개정 2007. 3.6]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 3.6>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당선자와 감사 및 건축사회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4.10>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7. 3.6>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항 제2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3.6, 2008. 3.24>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의 위임사항
4. 제16조 제1항 제6호 외에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5.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위원회의 설치
7. 회원의 징계
8. 포상자의 결정
9. 정부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
10.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제28조(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26]

제29조(회의록) 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3.6>

제 6 장 건축사회회장회의 및 위원회

- 제30조(건축사회회장회의) ① 협회는 건축사회회장으로 구성되는 건축사회회장회의를 둔다. <개정 2007. 3.6>
- ② 건축사회회장회의의 의장은 협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07. 3.6>
- ③ 건축사회회장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26>

- 제31조(위원회 등) ① 협회는 사업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3.24, 2012. 3.26>

1. 중앙윤리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법제위원회
5. 국제위원회
6. 문화홍보위원회
7. 회원권익보호위원회

-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4.10>
- ③ 중앙윤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윤리위원회 내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6.11>
- ④ 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08. 3.24>
- ⑤ 회장은 사안에 따라 실무조직(T/F, W/G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 3.24>
- [전문개정 2007. 3.6]

-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1조 제4항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07. 3.6, 2008. 3.24>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24, 2011. 1.24>
- ③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3.6>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 3.6>

제33조(위원회 등의 임무) ① 각 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7. 3.6>
② 위원회, 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조직(T/F, W/G 등)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24, 2013. 4.10>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34조(사무기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7. 3.6>
② 사무기구와 담당업무는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상근이사) ①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③ 상근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10, 2014. 6.11>
[본조신설 2012. 3.26]

제35조(급여)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와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6>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6조(재정) ① 협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정회원회비
3. 준회원회비
4. 특별회비
5. 사업 수익금
6. 수수료
7. 기타 수입금

②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의 입회비 및 회원회비, 사업 수익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3.26>

③ 수입금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협회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37조(교부금) ① 협회 회장은 입회비 및 준회원회비의 일부를 건축사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3.6>

② 교부금의 액수 및 배정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2007. 3.6>

제39조(회계년도) ① 협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후 총회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집행예산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40조(결산서 제출)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비용 등)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3.6>

제 9 장 건 축 사 회

제42조(구성 및 운영) ① 건축사회는 해당 시·도에 소속된 제7조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 3.26>

② 건축사회는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회칙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건축사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3.6>

[전문개정 2007. 3.6]

제43조(사업) 건축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3.6>

1. 건축사 업무의 개선 발전
2. 회원의 품위향상 및 윤리 확립
3.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4. 건축에 관한 연구·조사·용역 및 감정
5.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6. 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7.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8. 협회가 위임·위탁한 업무와 건축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협회 총회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회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건축사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소속 건축사회 회비의 결정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회칙 제정 및 개정
6. 기타 건축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전문개정 2007. 3.6]

제45조(임원) ① 건축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회장외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10, 2014. 6.11>

② 임원의 구성, 권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사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3.6]

제46조 삭제 <2007. 3.6>

제47조 삭제 <2007. 3.6>

제48조(지역건축사회) ① 지역건축사회 회장은 해당 지역건축사회를 대표하며, 건축사회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3.6>
② 지역건축사회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역건축사회는 정관 및 소속건축사회 회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으며,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소속 건축사회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4. 6.11>

제49조 삭제 <2007. 3.6>

제50조(재정) ① 건축사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회비
 2. 운영회비
 3. 협회의 교부금
 4. 특별회비
 5. 사업 수익금
 - 가. 간행물 출판에 따른 판매 수익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
 - 나. 광고료, 회관임대료 등 수익금
 6. 감정 및 제증명 수수료
 7. 제1호 내지 제2호 외에 총회에서 정한 회비
 8. 기타 수익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건축사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인가받은 업무의 제증명 수수료는 협회의 기준에 따른다.
- ③ 건축사회에서 수납한 제36조 규정에 의한 협회의 회비, 수수료 등은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51조(업무의 위임과 보고) ① 협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회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26>

1. 제8조,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36조 규정에 의한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건축사회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44조 규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③ 협회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사회에 위임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3.24>
- [전문개정 2007. 3.6]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52조(포상) 협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3.6>

1. 건축계 및 협회 발전과 대외적으로 협회를 빛낸 회원
2. 건축계 및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

제53조(추대회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해당 건축사회의 추대를 받아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하고 추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3.6, 2013. 4.10>

1. 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2.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 자
- ② 추대회원은 정회원회비를 면제한다.

제54조(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26>

1. 주의
2. 경고
3. 권리정지
4. 제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4. 6.11>

③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3.6]

제55조(회비미납의 징계) ①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은 이사회,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 경고
2. 6개월 이상 : 권리정지
3. 12개월 이상 : 제명

② 제1항 제2호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개정 2014. 6.11>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신설 2014. 6.11.>

[전문개정 2007. 3.6, 2012. 3.26]

제55조의2(징계사항의 고지) 협회는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26]

제56조(직무정지) ① 협회 회장은 제1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건축사회 회장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6]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6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총회에서 제출된 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7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지부간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사에 한하여 간사 정원의 과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7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38조제2항의 대의원의 임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지부에서는 이 규정 시행이후 전년도에 한하여 대의원 정원의 1/2(소숫점 이하는 절산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7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제17조제1항의 3년으로 개정된 임원의 임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정 시행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7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개정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및 지부장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8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제3호의 개정으로 추가 선출되는 이사 2명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3. 본 정관 시행 당시 건축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8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8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제1호, 제14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제7호·제2항,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50조는 198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3조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8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지부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지부임원 임기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임원의 임기만료는 당해연도의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부장과 지부부회장의 직무수행기간은 동일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규정에 있어서 지부장 및 지부 부회장은 당해정관을 시행한 날로부터 제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지부장 및 지부 부회장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9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종전규정에 의한 지부장 및 분소회장은 본 규정에 의한 건축사회 회장 및 분회 회장으로 본다.
- ②본 정관 시행일로부터 제규정상의 지부 및 분소는 건축사회 및 분회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199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으로 추가 선출되는 이사 5인중 3인과 당연직 이

사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임기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특례)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개정규정 제20조 제4항 및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회비미납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윤리규약 등의 개정) ①윤리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정관 제8조제3항” 을 “정관 제10조”로 한다.
②이사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관 제24조”를 “정관 제25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③감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관 제14조”를 “정관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대회원의 정회원회비 면제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 제5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추대된 추대회원의 정회원회비는 면제된다.

제3조(건축사회 회칙 제정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 제42조 제2항에 불구하고 회칙을 제정하지 않은 건축사회는 현행 제42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축사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사회 임

원의 임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및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1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의 보증업무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후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은 건축사법 개정규정 제8조제1항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정회원은 개정규정 제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사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 정관에 따른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특별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특별회원은 이 정관에 따른 전문회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따른다.

제3조(추대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추대회원은 이 정관에 따른 추대회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회장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시도건축사회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